

직 원 회 의 록

담당	시설장

일 시	2025년 07월 25일 (17:00 ~ 17:30)		
장 소	센터 회의실	진 행 자	센터장
참석인원	참석인원 : 3명 / 전체인원 : 5명		
회 의 내 용			
1. 인사말 다시봄 재가복지센터의 25년도 제3회 직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무더위로 인해 근무와 일상 생활이 어려움이 있습니다. 수급자 및 직원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 2. 여름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 몇몇 수급자께서는 고온으로 인해 기력저하 보이고 계십니다. 신체온도의 유지를 돕기위해 실내온도 및 환경에 신경써 주시기 바라며, 음식물이 변질이 우려됨으로 항시 주의하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, 직원 여러분의 건강이 최우선임으로 외출은 자제하여 주시고, 이동 시 양산,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는 등 관리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. 3. 6월 급여 지급 - 6월 급여가 6월 18일에 지급되었습니다.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4. 근무관리 - 현재 우리 센터의 직원여러분의 태그율은 매우 높고, 특이사항 기재도 잘하고 계십니다. - 상태기록지 작성을 원하시는 분은 상태기록지(월별)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 - 8월 휴가계획 있으시면, 일정 조정 미리 연락부탁드립니다. (수급자 또는 보호자 일정 협의요망) 5. 직원교육 안내 - 회의 종료 후 종사자 윤리지침,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함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6. 그 외 공지사항 - 의무교육(온라인) 이수 부탁드립니다, 이수 완료시 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 - 직원교육 및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센터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도움 드리고 있으나, 늦은 시간 장거리임에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			
회 의 결 과			
1. 수급자 건강 및 음식물 처리 상담을 통한 확인 완료 2. 급여명세서 전달 및 확인 완료 3. 종료시 특이사항 및 상태기록지 작성 확인 4. 의무교육 리스트제공 및 보수교육 이수 독려			
붙 임	1. 회의 참석자 명단 1부		

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& 종사자 윤리지침

담당	시설장

교육일시	2025년 07월 25일 (17:30-18:00)		
교육장소	센터 회의실		
교육대상 및 인원	3명		
교 육 일 정			
교육방법	내 용	강 사 명	비 고
자체교육	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및 종사자 윤리지침	김혜경 센터장	
교 육 내 용			
○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1. 목적 : 직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인권보호 및 대응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직원의 권리와 인권을 강화하여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. 2. 직원의 인권보호 및 존중 1) 기관은 직원의 인권에 대해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,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. 2) 기관은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 할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.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고 시정 조치하며,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. 3) 직원은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기관장(최고관리자)에게 즉시 보고하여 시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고, 기관은 인권 침해로부터 정신적인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도록 한다. 3. 인권침해 접수 1)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인권침해 내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접수할 수 있으며 기관은 고충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. ①방문, 관리자 면담 ②전화 또는 서면 ③문자, SNS ④인터넷 ⑤건의함 4. 인권침해 유형 : 1) 폭언 2) 폭행 3) 성희롱, 성폭력 5. 인권침해 대응방법 1) 직원의 대응방법 인권침해상황발생 → 1)단계:자제요청 및 즉시 경고 → 2)단계:녹취 사전고지 → 3)단계:응대종료,관리자보고 경찰신고 2) 기관의 대응방법 인권침해상황발생 → 1)단계:장기요양원 안전확보 및 지원 → 2)단계:수급자, 보호자, 장기요양원과 상담 → 3)단계:고충전담기구 심의 결정사항 조치 → 4)단계: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6. 부당요구 대응방법 1) 방문요양 업무범위 : 신체활동지원, 인지활동지원, 일상생활지원, 정서지원 2) 부당요구 유형 :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,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,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3) 부당요구 대응절차 부당요구(대우) 대면→1차응대→해결혹은 2차응대→보고→방문→조치계획수립→중재→종결→사후평가 ○ 종사자 윤리지침 1. 직원의 기본적 윤리 2. 수급자에 대한 윤리 3. 전문직으로서의윤리 1)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 ①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. ② 사회복지사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. 2) 요양보호사윤리지침 ① 인종, 연령, 성별, 성격, 종교, 경제적 지위, 정치적 신념, 신체, 정신적 장애, 기타 개인적 선호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. ②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, 복지사, 센터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 ③ 대상자에게 유아어, 명령어,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.			
붙 임	1. 교안 1부 2. 참석자 명단 1부		